BA0 194592

9 5 3. 11. 3.
제 3 종우편물인가

관보

편집 및 발행 총 무 처
전 화 70—4331

제8608호

1.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치용 관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1980. 7. 31. (목)

차 례

각 란

고 시

○재무부고시제870호(징발보상증권원금상환과이자지급)…… 3
○체신부고시제134호(국제보험소포취급수수료)…… 4
○국세청고시제80-32호(기준가격변경고시)…… 4
○공업진흥청고시제80-1, 190호~제80-1, 193호(한국공업규격확인) …… 5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118호(공유수면점용기간연장허가)…… 5
○포항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54호·제55호(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연장허가) …… 5
○포항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56호(해기사면허장무효) …… 5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10호(해기사면허장무효) …… 6
○전파연구소고시제215호(형식검정합격기기일련번호부여)…… 6

공 고

○내무부공고제21호
○문교부공고제1, 533호
○농수산부공고제757호
○상공부공고제86호
○교통부공고제14호
○문화공보부공고제426호 (제10회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개최요강개정)…… 6
○내무부공고제22호·제23호(기부금품모집허가) …… 6
○체신부공고제49호(전기통신공사업허가사항변경) …… 7
○총무처공고제42호(제4회군법무관임용시험제2차시험 합격자및동제3차시험시행계획공고) …… 7
○공업진흥청공고제80-295호(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심사기준) …… 7
○공업진흥청공고제80-296호~제80-300호(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 …… 7

(이면 계속)

2503 A—1—4
1969. 1. 31승인

대한민국정부

190×268 신문용지 54g/m²

○공업진흥청공고제80-302호~제80-306호(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준개정) ····· 9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7호·제28호(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 ····· 10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공고제27호(선박신호부자검부) ····· 10

지방행정

○서울특별시고시제270호(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 10
○서울특별시공고제236호(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및건축계획공람공고)··· 11
○경상남도공고제205호(울산도시계획방어진제4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 ····· 11
○경상남도공고제206호(울산도시계획무거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 11

휘 보 란

○광업권출원(광업등록사무소) ····· 12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 12
○공시최고 ····· 12
○재권판결 ····· 16

1340

고 시

◉재무부고시제870호

징발보상증권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0년 7월31일

재 무 부 장 관

징발보상증권원금상환과이자지급

국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발보상증권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대상증권 및 발행회차
   가. 대상증권 : 징발보상증권
   나. 발행 회차
      1) 제2회제3차(1971.9.1자 발행) 제9차년도
      2) 제4회제1차(1973.9.1자 발행) 제7차년도
      3) 제5회제1차(1974.9.1자 발행) 제6차년도
      4) 제6회제2차(1976.9.1자 발행) 제4차년도
2. 원금 상환방법
   가. 제2회 제3차
      1) 등록국채
         등록금액의 1/2을 상환한다.
      2) 무기명 국채
         증권면에 기재된 발행일련번호의 끝번호가 4, 9중 1개를 추첨하여 당첨된 끝번호의 증권을 상환한다.
   나. 제4회 제1차
      1) 등록국채
         등록금액의 1/4을 상환한다.
      2) 무기명 국채
         증권면에 기재된 발행 일련번호의 끝번호가 4, 5, 6, 0중 1개를 추첨하여 당첨된 끝번호의 증권을 상환한다.
   다. 제5회 제1차
      1) 등록국채
         등록금액의 1/5을 상환한다.
      2) 무기명 국채
         증권면에 기재된 발행 일련번호의 끝번호가 1, 3, 4, 7, 0 중 1개를 추첨하여 당첨된 끝번호의 증권을 상환한다.
   라. 제6회 제2차
      1) 등록국채
         등록금액의 1/7을 상환한다.
      2) 무기명 국채
         증권면에 기재된 발행 일련번호의 끝번호가 2, 4, 5, 7, 8, 9, 0중 1개를 추첨하여 당첨된 끝번호의 증권을 상환한다.
3. 이자 산출방법
   가. 제2회 제3차
      1) 등록국채
         1979년 9월 1일부터 1년간의 이자를 연5푼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무기명 국채
         1971년 9월 1일부터 1980년 8월31일까지의 이자를 5할 5푼 1리 3모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제4회 제1차
      1) 등록국채
         1979년 9월 1일부터 1년간의 이자를 연5푼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무기명 국채
         1973년 9월 1일부터 1980년 8월31일까지의 이자를 연4할 7리 1모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제5회 제1차
      1) 등록국채
         1979년 9월 1일부터 1년간의 이자를 연5푼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무기명 국채
         1974년 9월 1일부터 1980년 8월31일까지의 이자를 연3할 4푼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제6회 제2차
      1) 등록국채
         1979년 9월 1일부터 1년간의 이자를 연5푼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무기명 국채
         1976년 9월 1일부터 1980년 8월31일까지의 이자를 연2할 1푼 5리 5모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상환대상증권 추첨요령
   가. 추첨방법 : 원금상환방법 "가""나""다""라"의 무기명 국채의 상환방법에 의한다.
   나. 추첨일자 : 1980년 8월14일(15 : 00)
   다. 추첨장소 : 한국은행 본점
   라. 추첨결과 : 한국은행 본·지점에 게시한다.
5.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개시일 : 1980년 9월 1일
6. 등록부의 등록 및 말소정지기간 : 1980년 8월 1일~8월31일
7. 기타 상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재무부 국고국 국고과 또는 한국은행 본점 증권부에 문

3

의할 것.

8. 시행일 : 이 고시는 198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체신부고시제134호

국제보험소포취급수수료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보험소포취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0년 7월29일

체 신 부 장 관

1. 보험가액별 취급수수료

보험가액	취급수수료
200금프랑까지	700
300 〃	920
400 〃	1,040
500 〃	1,150
600 〃	1,270
700 〃	1,400
800 〃	1,500
900 〃	1,610
1,000 〃	1,730
1,100 〃	1,840
1,200 〃	1,960
1,300 〃	2,070
1,400 〃	2,200
1,500금프랑까지	2,300
1,600 〃	2,420
1,700 〃	2,530
1,800 〃	2,650
1,900 〃	2,770
2,000 〃	2,880

2. 시행일자 : 1980년11월 1일

⊙국세청고시제80-32호

기준가격변경고시

1.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제80-20호(80. 4.17)「설탕」및 고시 제80-22호(80. 5. 9) 중 「철근」의 기준가격(독과점가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한다.

2. 고시 제80-29호(80. 7.16) 중 「일반화물자동차」의 사업자 "기아산업(주)"를 "새한자동차(주)"로 정정한다.

1980년 7월25일

국 세 청 장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1980년 7월24일부터 적용한다.

품목	사업자	규격	단위	가격(원)	거래조건	결제조건
설탕	제일제당공업(주)	A 3kg	포	2,517.91	현금상차도	현금
		A 30kg	〃	24,479.70		
		A 15kg	〃	12,239.85		
		A 500g	〃	419.68		
		# 30kg	〃	25,134.24		
	(주)삼양사	정백 30kg	〃	24,479.70	〃	〃
		〃 15kg	〃	12,239.85		
		〃 3kg	〃	2,517.91		
		CA 1㎏	〃	836,923.60		
		〃 30kg	〃	25,134.24		
철근	동국제강(주)	13㎜ 미만	㎏	236,130	공장도	〃
		13㎜ 이상~16㎜ 미만	〃	231,500		
		16㎜ 이상	〃	224,500		
		고장력	〃	251,870		
	강원산업(주)	13㎜ 미만	〃	236,130	공장상차도	〃
		13㎜ 이상~16㎜ 미만	〃	231,500		
		16㎜ 이상	〃	224,500		
		고장력	〃	251,870		

⊙공업진흥청고시제80-1,190호~제80-1,193호

공업표준화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공업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0년 7 월26일

공업진흥청장

규 격 내 용

고시내용	규격번호	규격명	연월일	비고
80-1,190	KS M 2097	배기가스중의 일산화탄소 분석방법	1980. 7.26	확인
80-1,191	KS M 2096	연도배기가스중의 카드뮴 및 납의 분석방법	〃	〃
80-1,192	KS M 2083	연료가스의 윤커식 발열량 측정방법	〃	〃
80-1,193	KS M 2094	배기가스중의 크롬 및 망간 분석방법	〃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118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허가 하였음을 고시한다.

1980년 7 월24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허가년월일	점용장소	수면종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받은자의 주소, 성명
1980. 7.24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8-47번지	해면	1,502평	임시저목장	80. 8. 8~80.11. 7 (3개월간)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18-47번지 태창목재공업(주) 대표이사 정해찬

⊙포항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54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허가 하였음을 고시한다.

1980년 7 월24일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

허가년월일	점용장소	수면종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피허가자 주소, 성명
1980. 7.24	영일군 구룡포읍 병포리 22번지 지선	해면	433평	조선용선가대	80. 8.22~81. 8.21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구룡포리 963번지 김달득

⊙포항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55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허가 하였음을 고시한다.

1980년 7 월24일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

허가년월일	점용장소	수면종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피허가자의 주소, 성명
1980. 7.24	영덕군 강구면 오포동 61-3번지 지선	해면	136평	하양장	1980.8.20~1981. 8.19	영덕군 강구면 오포동 12-1 조일산업(주)대표 송상대

⊙포항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56호

다음 해기사 면허장을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무효 고시한다.

1980년 7 월24일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면허종류	본적	비고
정영남	1940. 9.16	6-140	병종기관사	경북 월성군 감포읍 점촌리 305번지	5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10호

다음 해기사 면허장을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무효 고시한다.

1980년 7 월22일

제주지방해운항만청장

면 종	번호	등록일자	성 명	생년월일	본 적	비고
을종1등항해사	8-42	79. 7. 4	고준수	38. 8.14	제주시 일도 일동 700의 3번지	분실
어선을종2등항해사	8-95	75. 8.12	고치학	55.11.23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연평리 2114	〃

◉전파연구소고시제215호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기기 일련번호를 고시한다.

1980년 7 월22일

전파연구소장

1.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 : (주)선박무선 대표이사 정완택
2. 기기의 명칭 : JXA-8형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3. 기기의 형식명 : WCS 2 J 1-2
4. 형식검정 번호 : WC80003
5. 형식검정 합격 년월일 : 1980년 7 월 4 일
6. 일련번호 : 0002~0010

공 고

◉내무부공고제21호

◉문교부공고제1, 533호

◉농수산부공고제757호

◉상공부공고제86호

◉교통부공고제14호

◉문화공보부공고제426호

제10회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개최요강개정

제10회 전국관광민예품 경진대회 개최요강(내무부공고 제12호, 문교부공고 제1, 525호, 농수산부공고 제749호, 상공부공고 제38호, 교통부공고 제6호, 문화공보부공고 제419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1980년 7 월31일

내 무 부 장 관
문 교 부 장 관
농수산부장관
상 공 부 장 관
교 통 부 장 관
문화공보부장관

제 2 항 "가"호, 제 6 항 "나"호, 제 9 항 "나"호, 및 제12항 "가"호중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 2 항 "다"호와 제 9 항 "나"호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요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공고제22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중앙일보·동양방송(주) 대표이사 김덕보가 제출한 불우아동결연후원금 모금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 3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1980년 7 월28일

내 무 부 장 관

1. 모금명 : 불우아동 결연후원금 모금
2. 모집지역 : 전국일원
3. 모집기간 : 1980년 7 월28일~1980년 9 월27일 (2 개월간)
4. 모집금액 : 1, 500, 000, 000원
5. 모집비용 : 없음
6. 모집방법 : 중앙일보·동양방송을 통한 캠페인 전개 독지가 기탁모금
7. 사업완료 예정시기 : 1980년12월31일

◉내무부공고제23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대표 유달영이 제출한 재해구호의연금 모금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 3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1980년 7 월28일

내 무 부 장 관

1. 모금명 : 재해구호 의연금 모금
2. 모집지역 : 전국일원
3. 모집기간 : 1980년 7 월28일~1980년 8 월31일
4. 모집금액 : 3, 000, 000, 000원

5. 모집비용 : 없음
6. 모집방법 : ○언론기관을 통한 독지가 기탁코금
○공무원·군인·국영기업체·임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기탁
7. 의연금 사용 : 재해이재민구호, 복구종합계획에 의거 장단기 생계구호와 피해주택 복구지원
8. 사업완료 예정시기 : 1980년12월31일

⊙체신부공고제49호

전기통신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년 7월29일

체 신 부 장 관

		변경전		변경후		
업종 및 등급	허 가 번 호	상호및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상호및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변 경 일 자
기계 : 2등급	-2-054	한일전설(주)	서울종로구세	한일전설(주)	(좌 동)	80. 7.16
선로 : 2등급	-2-017	박 준 용	종로 202	최 광 호		

⊙총무처공고제42호

제 4 회군법무관임용시험제 2 차시험합격자및 동제 3 차시험시행계획공고

제 4 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 2 차시험 합격자 및 동 제 3 차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년 7 월31일

총 무 처 장 관

1. 제 2 차시험 합격자명단(별항)
2. 제 3 차시험 시행계획
가. 일시 : 1980년 8 월13일(수) 10 : 00부터
나. 장소 : 중앙청 제 1 회의실
3. 응시자 주의사항
제 3 차시험에 응시할 자는 면접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및 필기용구를 지참하여 09 : 30까지 면접시험장에 출두하여야 한다.

⊙공업진흥청공고제80-295호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심사기준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운영요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표시허가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

1980년 7 월25일

공업진흥청장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F 4524
표시지정품목 규 격 명 : 창호용 호차
표시허가심사기준내용 :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업진흥청공고제80-296호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

공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허가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0년 7 월26일

공업진흥청장

1. 허가업체명 : 서울프라스틱공업사
2. 대표자명 : 이상윤
3.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덕절리 산51-1
4. 허가내용

허가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종류, 등급 또는 호칭
2137	KS M 3808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	보온판 1, 2, 3, 4호

5. KS마아크 표시방법

상품단위	표시장소	표 시 방 법	표 시 내 용
개개	후면	인쇄또는지워지지않는방법	1. KS마아크 15㎜이상 2. 종류, 치수, 제조년월일 제조자명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업진흥청공고제80-297호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

공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허가(또는 추가허가) 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0년 7 월26일

공업진흥청장

1. 허가업체명 : 대원안전유리공업(주)
2. 대표자명 : 김은식
3. 소재지 : 경기도 인천시 북구 효성동 525-2
4. 허가내용

허가번호	규격번호	규격명	종류, 등급 또는 호칭
(추가)	KS L 2002	강화판유리	평명보통판 4.6㎜ 곡면보통판 6㎜ 평면마판 8, 10, 12㎜

5. KS마아크 표시방법

상품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매장	모서리	지워지지 않도록	마아크는 3~30㎜ 것으로 임의 선택 2002 표시사항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업진흥청공고제80-298호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

공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허가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0년 7월26일

공업진흥청장

1. 허가업체명 : (주)럭 키
2. 대표자명 : 구자학
3.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353
4. 허가내용

허가번호	규격번호	규격명	종류 등, 급 또는 호칭
제2138호	KS M 3407	일반용폴리에틸렌관	2종 : 75, 100, 125, 150, 200, 250㎜
제2139호	KS M 3805	연질염화비닐지수관	평면형평판(FF) : 100(5 t), 150(5 t), 200㎜(5 t) 특수형(S) : 140(4.8 t), 150(4.8 t), 150(5 t), 200(4.8 t), 200(5 t), 230(5 t), 230(9.5 t), 240(5 t), 300(9 t), 300㎜(13 t)
제2140호	KS C 8433	카플링(경질비닐전선관용)	1호 카플링 : 14, 16, 22, 28, 36, 42, 54, 70, 82㎜
제2141호	KS C 8434	코넥타(〃)	2호 코넥타 : 14, 16, 22, 28, 36, 42㎜
제2142호	KS C 8436	박 스(〃)	매입용4각 아우트레드박스 : 40B54 매입용스위치박스 : CSU11 4각콘크리트박스 : 4 54 8각콘크리트박스 : 8 54
제2143호	KS C 8441	노오말밴드마(〃)	14, 16, 22, 28, 36, 42, 54, 70, 82

5. KS아마크 표시방법

품목	상품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KS M 3407	본당	표면보기쉬운 곳(연속표시도 가함)	1. 각인 또는 인쇄 2. KS마아크 크기 3㎜ 이상	KS C 3407의 표시사항 전항목
KS M 3805	권	〃	1. 인쇄 2. 마아크 크기 : 3㎜이상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2조에 규정한 크기	KS C 3805의 표시사항 전항목
KS C 8433	매개마다	표면보기 쉬운 곳	각인 또는 인쇄	1. KS마아크 크기 3㎜이상 2. 제품명칭 및 관의호칭 3. 제조자명 또는 약호
KS C 8434 KS C 8436 KS C 8441	〃	〃	〃	

8

◉공업진흥청공고제80-299호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

공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허가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0년 7월26일

공업진흥청장

1. 허가업체명 : 원미섬유공업(주)
2. 대표자명 : 경세호
3. 소재지 : 충남 대전시 중구 도마동 4-70
4. 허가내용

허가번호	규격번호	규격명	종류, 등급또는호칭
1	KS K 7801	와이셔어츠	일괄허가(목둘레 35~45㎝)

5. KS 마아크 표시방법

상품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상품개개 및 포장단위	표지와포장지	제직또는 인쇄	가. 마아크의 크기 표지 5~15㎜ 포장지 20~50㎜ 나. 표시내용 (1) 제조자명 또는 약호 (2) 섬유의혼용율 (3) 목둘레 (4) 화장(긴소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업진흥청공고제80-300호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

공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허가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0년 7월26일

공업진흥청장

1. 허가업체명 : 유성화학공업(주)
2. 대표자명 : 황홍식
3.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15
4. 허가내용

허가번호	규격번호	규격명	종류	등급또는호칭
2145	KS M 3802	비닐석면타일	300×300㎜, 250×250㎜	(자종두께 2.0, 2.5, 3.0㎜)

5. KS 마아크 표시방법

상품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포장단위	박스옆부분	인쇄또는지워지지않는방법	(1) 마아크의 크기 25~35㎜ (2) 표시내용 (가) 색문늬 (나) 치 수 (다) 제조자명 또는 약호 (라)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번호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업진흥청공고제80-302호~제80-306호

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및표시허가심사기준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년 7월28일

공업진흥청장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M 7101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신문용지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공고구분 : 개정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제80-303호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M 750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골판지라이나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공고구분 : 개정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제80-304호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M 7106 7107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화장지의 원지, 화장지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공고구분 : 개정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제80-305호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M 7108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도화용지 A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공고구분 : 개정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제80-306호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M 7102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인쇄용지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공고구분 : 개정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7호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년 7월31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3호선(목포~천안간)
3. 사용개시구간 : 자.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봉사리 509-1번지(26.2km)
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227-8번지
4. 중요경과지 : 가.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흥사리 530번지
나.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28-5번지
다. 전라북도 부안국 상서면 감교리 807-13번지

✱본 사용개시 구간의 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보관 열람함.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8호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년 7월31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제24호선(광주~울산간)
3. 사용개시구간 : 자.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월률리139-1번지(35.2km)
지. 전라북도 남원군 주생면 상동리 697-3번지
4. 중요경과지 : 가.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470-3번지
나.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36-3번지

※본 사용개시 구간의 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보관 열람함.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공고제27호

다음 선박의 신호 부자를 점부 하였기 공고한다.

1980년 7월23일

제주지방해운항만청장

신호부자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용도	점부일자	신호부자	소유자
SUM 37275	3삼명	286.01톤	화물선	80. 7.16	D.8.C.I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서귀리554번지 강창환

지방행정

⊙서울특별시고시제270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 건축계획승인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48호(79. 7.19) 및 제159호(80. 5.19)로 각각 공람공고 한바 있는 아현1구역(27-48구획)과 (후암1 구역)에 대하여 관계인의 의견서 심의 후(아현1구역)일부 계획을 변경하고

2.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건축법 제33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건축계획을 승인함.

1980년 7월24일

서울특별시장

가. 관리처분계획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시 건축국 재개발2과외 관할구청 시민 홀 및 주택과에 비치하고 열람함.

1) 건축물의 규모

구 분	층수	세대당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비 고
단독주택	2	50이상	50% 이하	200% 이하	아현 1
공동주택	3	33〃	35% 〃	150% 〃	〃
아파트	5-7	〃	25% 〃	150% 〃	〃 (29구획 및 39구획)
〃	6-7	〃	25% 〃	200% 〃	후암 1

2) 건축물의 높이

제1항의 층수로 하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규정을 적용함.

3) 건축물의 모양

건축물의 평면은 구역 전체 경관조성에 적합한형으로 하며 지붕은 박공 및 모임형으로 하여야 함.

4) 건축방법

주민자력에 의하여 당시 지정업체로 하여금 건축함.

5) 건축기간 및 합의기간

인가일로부터 1년간

6) 기타사항

동구역 건축계획 승인서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함.

⊙서울특별시공고제236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및건축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69호(77. 3.14)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봉천4일부구역(봉천동 산101번지일대 6,508평)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과 부합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3. 관리처분 계획은 개별 통보하며 관계도서는 건축국 재개발2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 열람하고 있읍니다.

1980년 7월25일

서울특별시장

⊙경상남도공고제205호

건설부고시 제152호(80. 5.20)호로 울산도시계획 방어진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시설결정된 지역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가신청기간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1980년 7월2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 방어진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구역 : 울산시 방어동 일부
3. 시행면적 : 93,189.80m²(28,190평)
4. 인가신청지정기간 : 1980년 7월26일~1980년 9월30일
5.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신청 :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구획정리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할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동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지정된 기간내에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기간내 신청이 없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함)
6. 기 타 : 본 사업에 관한 관계도서와 참고자료를 울산시청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의 공람에 공함.

⊙경상남도공고제206호

건설부고시 제152호(80. 5.20)로 울산도시계획무거토지구획정리지구로 시설결정된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가신청기간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11

1349

1980년 7 월2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 무거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구역 : 울산시 두거동 일대
3. 시행면적 : 354, 296㎡(107, 175평)
4. 인가신청지정간 : 1980년 7 월26일~1980년 9 월30일
5.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및 신청 :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구획정리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할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동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지정된 기간내에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단, 기간내 신청이 없을 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함)
6. 기 타 : 본 사업에 관한 관계도서와 참고자료를 울산시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함.

휘 보

○광업권출원

광업출원도면수정통지

광업지적	출원번호	광종명	주 소	성 명
예미 98	78-1499	납 석	서울서대문구 신촌동 70	성국현
영춘 145	79-2949	은·동·아연·철·텅그스텐·모리브덴	강남구서초동 590 무지개 A PT 10동 302호	박우용

광업권의 설정 출원에 대하여 별첨 사항을 수정한 도면 3 매를 1980년 8 월21일까지 제출할 것을 광업법 제17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함.

주 의

1. 본문 기한내에 수정도면 3 매가 광업등록사무소에 도달하지 아니할 시에는 광업법 제17조의 2의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 각하함.
2. 별첨 하부도는 수정도면에 첨부하여야 함.
3. 별첨 수정사항과 상위되는 부정확한 도면을 제출할 시는 본 통지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원 각하함.
4. 시행규칙 제 8 호(서식 제 5 호)에 의하여 성 제출할 것.

첨 부 : 출원 구역도 및 수정사항 1부

1980년 7 월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공 고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 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심을 바랍니다.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1980년 7 월24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연도 사건번호	연도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압수물건 물건명	압수물건 수량
80 1188	80 167	양득필	점유이탈물횡령	일체불상	1	자전차(오성사)	1 대

○공 시 최 고

80. 카. 4, 298

신청인 피 용 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산39의 4

상아아파트 비동 402호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0월29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3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판 사 김 대 환

증서의중요한취지

1. 발행횟수·권종·주권번호·매수·주수·발행인·명부상명의인

발행횟수	권 종	주 권 번 호	매 수	주 수	발 행 인	명부상명의인
11	100	592, 593	2	200	동산토건(주)	피 용 환
12	10	378, 379, 380	3	30	〃	〃
12	50	73	1	50	〃	〃
12	100	383, 384	2	200	〃	〃

80. 카. 4, 319

신청인 최 윤 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2동 264의 6

한신아파트 35동 1105호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0월3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4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판 사 김 대 환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다01253665
1. 금 액 금918, 000원정
1. 발 행 일 1980년 7 월 1 일
1. 발 행 인 중소기업은행반포지점

---

80. 카. 4, 323

신청인 이 천 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435번지(15통 3 반)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0월30일 14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4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판 사 홍 일 표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다00908557
1. 액 면 금200, 000원정
1. 발 행 일 1980년 5 월23일
1. 발행인및지급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역삼동예금취급소
1. 소 지 인 이천정

---

80. 노. 248

청구인 김 인 수(金 仁 洙)

주 소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창곡리 546

사건본인(부재자) 김 종 덕(金 鍾 德)

1917년10월 5 일생

본적및최후주소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창곡리 546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가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81년 2 월 6 일

1980년 7 월23일

수원지방법원

심판관 전 상 석

---

80. 카. 2, 125

신청인 조 동 명(趙 東 明)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 의18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 3 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3일

수원지방법원

판 사 곽 동 현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799966
1. 금 액 금200, 000원정
1. 지 급 일 1980년 2 월28일
1. 발 행 인 서진산업주식회사
1. 수 취 인 조동명
1. 지 급 지 주식회사 한일은행안양지점

---

80. 카. 986

신청인 유 병 예(俞 炳 禮)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표정리 297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1일

대전지방법원 13

판 사 유 정 주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 번 호 244007
1. 액 면 금215,301원정
1. 발 행 일 1980년 6월19일
1. 발 행 인 합동방적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종 화
1.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대전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80.카.1,050

신청인 김 문 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924의 2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1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강 창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6매
1. 번호·액면·지급일

번 호	액 면	지 급 일
아00011281	금1,000,000원정	1980. 8.10
아00011283	금2,000,000원정	1980. 8.15
아00011284	금2,000,000원정	1980. 8.20
아00011288	금1,000,000원정	1980. 8.22
충아012670	금2,000,000원정	1980. 8.25
아00011285	금2,000,000원정	1980. 8.30

1. 지 급 지 대전시
1. 지급장소 주식회사 충청은행원동지점
1. 발 행 지 대전시
1. 발 행 인 정운기
1. 최후소지인 김문기

80.카.1,062

신청인 김 동 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의96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1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유 정 주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2매
1. 번호·액면·지급일

번 호	액 면	지 급 일
마 상	금390,000원정	80. 6.30
마 상	금390,000원정	80.12.30

1. 발 행 일 1979년 9 월28일
1. 지 급 지 대전시
1. 발 행 인 (주)오로라 하윤조
1. 수취인겸 소지인 신청인

80.카.1,066

신청인 이 대 현

대전시 중구 선화3동 317의 11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1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강 창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다1407244
1. 액 면 금1,000,000원정
1. 발 행 일 1980년 7 월 7 일
1. 발 행 지 주식회사 충청은행영업부
1. 최후소지인 이대현

80.카.1,088

신청인 조 용 문(趙 容 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1의 175

은하아파트 에이동 1210호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1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유 정 주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사871157
1. 액 면 금1,000,000원정
1. 발 행 일 무기입
1. 지 급 일 1980년 1월31일
1. 지 급 지 주식회사 한일은행대전지점
1. 지 급 장 위와 같음
1. 발 행 인 강명도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80. 카. 1, 107

신청인 박 순 근
대전시 동구 인동 78의 6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1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강 창 응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0장
1. 번 호 아23091호~아23100호
1. 금 액 공 란
1. 발행년월일 공 란
1. 지 급 일 공 란
1. 발 행 인 공 란
1. 발 행 지 공 란
1. 지 급 인 공 란
1. 수 취 인 공 란
최후소지인 신청인

---

80. 카. 1, 126

신청인 최 호 성
대전시 대동 5의 206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1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유 정 주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2매
1. 번 호 아23091호~아23100호
1. 액 면 금2,000,000원정
1. 발 행 일 1980년 5 월 7 일
1. 발 행 인 심재훈
1. 지 급 일 1980년 7 월25일
1. 지 급 지 충청은행대전인동지점
1. 최후소지인 김성만

---

80. 카. 1, 143

신청인 김 성 만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3동 551 대일상사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1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강 창 응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액 면 금2,500,000원정
1. 번 호 47109
1. 발 행 일 1980년 5 월 7 일
1. 발 행 인 심재훈
1. 지 급 일 1980년 7 월25일
1. 지 급 지 충청은행대전인동지점
1. 최후소지인 김성만

---

80. 카. 1, 144

신청인 충남세한자동차판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광빈
대전시 중구 선화동 5의 2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80년11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80년 7 월21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유 정 주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 번 호 에치시(HC) 30217848
1. 액 면 금14,505,789원정
1. 발 행 일 1979년 8 월21일
1. 발 행 인 손기철
1. 지 급 지 주식회사 한일은행대전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5

○제 권 판 결

80. 카. 435

신청인 이 기 준

대전시 동구 인동 53

다음 기재증서에 대하여 1980년 7 월18일 10시까지 권리의 제출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1980년 7 월18일

대전지방법원

판 사 윤 정 주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충아 004386
1. 발행년월일 미기재
1. 액 면 미기재
1. 지 급 일 미기재
1. 지 급 장 소 충청은행인동지점
1. 발 행 인 및 최후소지인 이기준

---

80. 카. 99

신청인 정 기 식(鄭 基 植)

경북 문경군 가은읍 작천리 776

다음 기재증권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최고를 하였는 바 공시최고 기일인 1980년 7 월19일 10시까지 권리신고 및 수표의 제출인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권판결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다음 기재증권의 무효를 선고한다.

1980년 7 월2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사 윤 정 보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송금수표
1. 액 면 금1,700,000원정
1. 번 호 2120530
1. 발행년월일 1979년11월 7 일
1. 지 급 은 행 문경군농협가은지소
1. 지 급 지 경북문경군가은읍
1. 발 행 은 행 서울농협영등포지소

---

80. 카. 174

신청인 김 봉 찬

제주시 서귀읍 서귀 2 리 820의 9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80년 3 월24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80년 7 월1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80년 7 월15일

제주지방법원

판 사 양 상 훈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국민주택채권 6 매
1. 번호 및 액면

번 호	액 면
사0026789가	금500,000원정
바60888461~64가	자금100,000원정
21081	금30,000원정

1. 발 행 일 1980년 1 월31일
1. 발 행 자 남제주군농업협동조합
1. 최후소지인 김봉찬

---

80. 카. 204

신청인 오 용 수

남군 안덕면 감산리 1507번지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80년 3 월26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80년 7 월15일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80년 7 월15일

제주지방법원

판 사 양 상 훈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5 매
1. 번호·금액·발행인

번 호	금 액	발 행 인
13839890	금1,000,000원정	남군농협중앙간이예금취급소
19767316	금100,000원정	국민은행서귀출장소
19767317	금100,000원정	〃
19767321	금100,000원정	〃
19767322	금100,000원정	〃

1. 발 행 일 1980년 3 월19일
1. 최후소지인 오용수

---

80. 카. 234

신청인 홍 성 순

제주시 서귀읍 서홍 1 리 441의25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80년 4 월 7 일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80년 7 월20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80년 7 월21일

제주지방법원

판 사 양 상 훈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일반B)
1. 번 호 가006916가
1. 액 면 금300,000원정
1. 발 행 일 1980년 3 월31일
1. 발 행 인 주식회사 제주은행서귀포지점
1. 최후소지인 홍성문